



HEALTH ▸ HYGIENE ▸ HOME

옥시레킷벤키저

옥시 가습기 살균제

3차 조사 1·2 단계 피해자를 위한

배상절차 제안

2018년 5월 12일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

기간	활동
2017년 하반기	일부 3차 조사의 1, 2단계 피해자 분들이 1, 2차 조사 대비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의료 기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발견함
2017년 11월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과 피해판정위원회에 미팅을 요청함
2018년 1월	미팅 성사가 지연됨에 따라 일부 3차 조사의 1, 2단계 피해자 분들께 배상절차 진행 지연에 대해 안내 드림
2018년 1월 25일	배상절차가 지연된 피해자 및 가족 분들과 만남을 가지고, 상황을 공유 드림
2018년 4월 5일	환경산업기술원과 피해판정위원회의 의료 전문가와 미팅을 진행하고, 3차 조사에 들어 판정 기준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함
2018년 4~5월	여러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배상규정을 업데이트 하기로 결정함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당사의 배상절차 제안

3차 조사부터 정부의 가슴기 살균제 피해 판정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당사는 이와 같은 상황 변화가 당사의 배상절차 및 배상안의 공정성 및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사 배상안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배상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배상규정 추가 사항: 상해 ‘D 그룹’

D 그룹을 추가하는 이유는 모든 피해자 분들께 일관되고 정확한 배상안을 제안드리기 위함입니다.

D 그룹을 포함한 모든 상해 피해자 분들은 현재 폐 기능 손상도와 관계 없이, 평생 동안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배상합의 후 5년 내 건강 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될 경우 배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 그룹 해당 기준

1) 영상의학 판독 결과

- 고해상 전산화단층촬영(HRCT)이나 X-ray 판독에서 피해자의 폐에 어떠한 이상 징후나 소견이 없는 경우

2) 폐기능 검사 결과

- 폐 기능 검사 결과, 가슴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일산화탄소 폐확산능 (DLCO),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 노력성 폐활량(FVC) 수치가 모두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인 경우)

3) 임상 기록

- 피해자의 과거 의료기록에서 가슴기 살균제 관련 임상상, (i)급성 혹은 아급성으로 생긴 호흡곤란, 호흡부전 또는 기침 증상, (ii)기흉, 피하기종 등의 폐압력 손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위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한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저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고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상황,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의 고견을 반영한 배상안은 당사의 홈페이지 (www.oxyrb.co.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료 기록 및 문서들을 면밀히 재검토 하여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지원 콜센터: 080-699-2273
- 이메일: care@oxy.co.kr
- 홈페이지: www.oxyrb.co.kr



HEALTH ▸ HYGIENE ▸ HOME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 및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